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9
----------	------

발의년월일 : 2017년 10월 31일

발 의 자 : 김선갑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대·김생환·김인제·김창수·
맹진영·박호근·서영진·송재형·
이윤희·최판술 의원(10명)

1. 제안이유

「하천법」의 개정(2016.1.19.)으로 하천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항(법 제89조)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조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제11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1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하천법」 제 8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관리청이 현금 또는 서울특별시수입증지(자치구청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부과 징수하거나 해당관리청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u></p> <p><u>② 하천관리청은 점용허가 등의 신청이 제7조 또는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u><삭 제></u></p>